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I 오피스텔 분양광고 (RC1 블록)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4.02.15.)**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4년 02월 20일(화) 09:00 ~ 17:30	2024년 02월 23일(금) 16:00 이후	2024년 02월 24일(토) ~ 02월 25일(일)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오피스텔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제2024-주택과-분양신고-제1호(2024.02.07.)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처리된 건축물임.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2023-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3.01.12.)]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1-1 (검단신도시 RC1 블록)
- 사업관계자

구분	분양사업자(사업주체)	시공사	신탁업자 겸 공급(분양)대금 관리자	분양대행사
회사명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이(주)	롯데건설(주)	대신자산신탁(주)	지우알앤씨(주)
법인등록번호	110111-7653888	110111-0014764	110111-7124665	180111-0652867

- **분양사업자와 신탁사와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 본 사업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분양사업자 겸 매도인인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이 주식회사와 자금관리사무신탁회사인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자금관리신탁사") 간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9,759.0000㎡ (업무시설(오피스텔) 지분 : 1,860.5909㎡)
 - 건축물연면적 : 84,490.3929㎡ (지상층 및 지하층 포함, 공동주택 66,627.6635㎡, 업무시설(오피스텔) 7,955.9958㎡, 근린생활시설 9,906.7336㎡)
 - 건축물층별용도 : 지하2층 :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우수펌프실/헬룸 등, 지하1층 : 주차장, 택배보관소, 창고 등, 지상1층 : 근린생활시설, MDF, 방재실, 관리사무소, 지상2층 :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 비즈니스라운지, 지상4층~지상23층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성됨 (공급대상물은 오피스텔이며,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 공급대상물이 아님)
 - 공급규모 : 지상 4층 ~ 지상 23층 1개동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40실
 - 주차대수 : 총 629대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54대

■ 내진설계 등급

구분	등급	내진능력
내진설계	I	최대지반가속도 0.204(g) -MMI VII 등급

※ 본 건축물은 내진설계에 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

■ 입주예정일 : 2026년 4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m²)

구분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업무시설 (오피스텔)	84OA	40	84.0372	35.6977	119.7349	79.1650	198.8999	46.514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라인	층	호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5일내	2024.08.14	2024.11.15	2025.02.14	2025.05.14	2025.08.14	2025.12.15		
84OA	9105동 1, 2호	4층	2	232,660,800	282,672,000	28,267,200	543,600,000	27,180,000	27,18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163,080,000
		5층	2	235,100,400	285,636,000	28,563,600	549,300,000	27,465,000	27,465,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54,930,000	164,790,000
		6~9층	8	237,497,200	288,548,000	28,854,800	554,900,000	27,745,000	27,745,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55,490,000	166,470,000
		10~20층	22	239,936,800	291,512,000	29,151,200	560,600,000	28,030,000	28,03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56,060,000	168,180,000
		21~23층	6	242,376,400	294,476,000	29,447,600	566,300,000	28,315,000	28,315,000	56,630,000	56,630,000	56,630,000	56,630,000	56,630,000	56,630,000	56,630,000	169,89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오피스텔은 총 40실 1개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층별, 향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에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실, 방재센터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실, 방재센터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각 용도별 계약면적으로 배분한 뒤, 오피스텔에 대한 대지면적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측량)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登記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登記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 및 대지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위 납부일정에 따라 1차, 2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2차 계약금 납부일자 경과 후 납부 시 연체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 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실입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분양광고문과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분양광고일(2024.02.1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분양사업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4년 02월 20일(화) 09:00 ~ 17:30	2024년 02월 23일(금) 16:00 이후	2024년 02월 24일(토) ~ 02월 25일(일) (10:00~16:00)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방 법	인터넷 청약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오피스텔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시각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일반 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4.02.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타입내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아래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4년 02월 23일(금)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당첨자 및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 결정합니다.
기타사항	• 예비입주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이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4년 02월 24일(토)~02월 25일(일)	10:00 ~ 16:00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오피스텔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계약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 계약자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하나은행	448-910062-46404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입금 시 동,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9105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9105동1001홍길동)
중도금 / 잔금	계약 체결 시 호실별 개별 가상계좌 부여 (계약서 명시)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448-910062-47104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중도금,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별 부여된 가상계좌번호가 상이하오니 분양대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층·호수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현금수납 불가) 2.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터넷 청약시 생략 가능 3.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4.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5.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법인 계약시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현금수납 불가) 2.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5.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6. 법인 등기부등본 1통 7.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2.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본주택 내 양식 비치) 3.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4.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4.02.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수분양자의 동의 및 통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청약 신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하는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함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상,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의 배치 구조 및 동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설비, 상하수도, 경관조명, 가로등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됩니다.
- 추후 분양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또는 실입주시 호실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호실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 부대 및 복리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대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임차인 포함, 계약자 및 소유자가 실거주 하지 아니하면 이용 불가할 수 있음)을 위한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 또는 플랫폼은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플랫폼의 개별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입주 시 고지 또는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중도금 용자를 알선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한 계약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또한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금융기관의 협의내용에 따라 중도금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계약자별 은행을 임의지정 할 수 있고 계약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본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제반 서류 발급 비용, 인지대, 대출보증수수료 등)으로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신용도 등의 사유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금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당 또는 1실당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인 및 외국인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를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의무사항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공급)주체 및 공급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롯데건설(주))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광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공급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와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수분양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중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입주시 정책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대신자산신탁(주)와는 무관하며, 시공사 롯데건설(주)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되므로,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 제공 품목

구 분	타입	무상제공 품목	
가전기기	84O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구 가스쿡탑 또는 3구 인덕션 중 택1 • 빌트인 전기오븐(후라이팬 서랍 포함/삼성, LG 중 택1) • 주방상판 매립 콘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TV 10" • 중앙 냉방용 천장형 팬코일유닛(FCU, 전실설치)
가구 /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관 신발장 • 현관 중문 (터닝) • 주방 상판, 벽 엔지니어드스톤 • 캐슬 미드웨이 선반 (ACC) • 침실1 화장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1 드레스룸 (가구도어+시스템가구) • 거실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타일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 거실, 복도, 주방 벽 시트판넬 • 침실3 불박이장 (파우더형)

■ 추가(유상)선택 품목(가전기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제조사	모델명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4도어 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특화수납장	삼성전자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RF60B91R2AP)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 (RQ33A74E1AP)	전 타입	5,600,000	560,000	5,040,000
	LG전자	오브제 4도어 냉장고 (M622GBB352) 오브제 3도어 김치냉장고 (Z332GBB151)		6,000,000	600,000	5,4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일반형 (DW60T7065SS) *가구도어 부착형		800,000	80,000	720,000
		고급형 (DW60B5095FG)		1,000,000	100,000	900,000

■ 추가(유상)선택 품목(가구/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거실	거실 스타일업 (바닥형)	84OA	거실, 복도, 주방 바닥타일 (포세린 타일)	220,000	1,980,000	
	조명 스타일업		거실 우물천장 직, 간접조명 + 복도, 주방 고급형 매입등	300,000	2,700,000	
침실	불박이장		침실1	슬라이딩형	290,000	2,610,000
			침실2	수납형	100,000	900,000
	침실 2, 3 선택형	침실통합형 + 대형 불박이장		160,000	1,440,000	
		대형팬트리 + 슬라이딩 도어		240,000	2,160,000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아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 품목 계약금	KB 국민은행	465101-01-299968	롯데건설(주)	입금 시 동,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9105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9105동1001홍길동)
잔금	계약 체결 시 호실별 개별 가상계좌 부여 (계약서 명시)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KB국민은행 465101-01-299971 롯데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와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공급주체(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전매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전매계약 시 양수인과 양도인은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 합니다.
- 세액(기재금액 기준)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의 50%인 75,000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
- ※ 계약체결 이후 기타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분양사업자에 대한 채무이행 및 분양사업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소득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시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일자에 전매 진행이 가능하며, 분양대금 및 연체료 미납, 대출 미승계 시에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하고, 실령 사업주체가 권리의무 승계서류를 수령하거나 직인을 날인하였더라도 이는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승계 관련 신청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전매제한과 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소송제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분양사업자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분양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6년 4월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전염병,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간 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의 통지는 SMS 또는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택배보관소, 비즈니스라운지
- 오피스텔의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과 구분되어 있음.
-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입면 변경,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공동주택의 계약면적(부대복리시설 등 포함)에 대해 사용권리 및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보증 관련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4-104-0000200 호	15,469,200,000	입주자모집광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요내용(분양보증약관 참고)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보증약관 제3조)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광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공사가 본 오피스텔 '대상사업'의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자로부터 시공사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분양사업자(매도인)가 본 오피스텔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사업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분양사업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 사 명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세종기술단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포브텍
감리금액	1,911,250,000	565,429,000	837,371,000	176,000,000

■ **사업관계사**

구분	분양사업자(사업주체)	신탁업자 겸 공급(분양)대금 관리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주) 외 1	대신자산신탁(주)	롯데건설(주)	지우알앤씨(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4, 10층 (역삼동)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4404호 (우동, 센텀리더스마크)
법인등록번호	110111-7653888	110111-7124665	110111-0014764	180111-0652867

본 분양물건은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주)에서 시행,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주)가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주)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주)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수입금계좌,의 명이는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주)의 자금관리사인 대신자산신탁(주)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관련 사항**

- 분양대금은 지정된 분양대금수납계좌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자금관리신탁사 대신자산신탁(주)”는 본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을 분양사업자(사업주체) 겸 매도인과 “자금관리신탁사”간의 계약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그 외 분양대금반환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자금관리신탁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분양수입금 등을 관리하면 “자금관리신탁사”는 자금관리와 관계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사가 시공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피분양자는 이의하지 않는다.
- 자금관리신탁사 “대신자산신탁(주)”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관리수납하되, RC1 블록[지하 2층, 지상 29층(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372세대, 오피스텔40실)] 전체 사업내역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다.
- 매도자 겸 시행자, 시공사, 대리사무신탁사, 대리금융기관 간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사업약정이 체결되어 있음을 피분양자는 인지하고, 본건 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분양대금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비(주) (등록번호 서울220099)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4, 10층 (역삼동)
- 사업방식 : 주택공급신탁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분양광고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VI 유의사항

구 분	설 계 공 지 내 용
<p>건본주택 및 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은 RC1블록 84OA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전자안내판(키오스크)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단지모형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호실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홈페이지 내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어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건축허가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호실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건축허가(변경)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및 사진 촬영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호실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타입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광고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호실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로 만든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합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광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광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제작물은 광고·홍보물로 호실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경,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설계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장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대상으로 외부에 표현된 도로, 공원, 주차장, 단독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 북서측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문화공원이 설치되어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단지 북측 47m도로와 남측 16.5m도로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6m)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 47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 약16.5M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약16.5M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호실은 소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전체 구역면적 21,550.00㎡ 중 서측 공원 1,792.00㎡를 기부채납하여 대지면적(사업부지) 19,759.00㎡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당 현장은 2022년 8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접수(2023년 1월 완료), 2022년 5월 최초 건축허가사건승인(건축심의)신청(2022년 6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마감자재 내용은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됩니다.
- 본공사시 호실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됩니다.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호실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실은 화재시 화재신호로만 열리며 평상시 잠겨있는 구조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p>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냉방시설로 인하여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9105동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 냉각탑이 계획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지상3층까지 해당)는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북측에 위치한 버스정류장과 육교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에 소음, 진동 및 시각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105동 하부에 지상 3층에는 오피스텔 전용 부대시설(비지니스라운지)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북측 47m 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변 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벽이 약 15m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동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p>단,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p>
<p>단지 및 부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주동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리어 DA),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 (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 3개층 높이(하부 근생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입니다. 저층부 호실은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호실은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g)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오피스텔용 쓰레기분리수거장 1개소가 지상1층 주동 북측 외부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경관저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저층호실은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내 조경시설물, 주차관제시스템,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DA 등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정고를 적용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고, 이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딩 및 주상복합건물의 특정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만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냉각탑이 후면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1개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저층호실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9105동)후면의 근린생활시설,관리사무소,경비실의 지붕에는 오피스텔용 냉각탑 1개소가 설치되며, 아파트(9102동~9103동사이) 후면의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판매시설용 냉각탑 1개소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층호실에 소음,진동,배관배선 노출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탑지붕층에는 소방성능심의 조건으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호실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용 탈취유니트가 설치되어, 오피스텔 일부 호실에 소음,진동,냄새 등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설치되는 탈취유니트 및 덕트가 노출시공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하2층~지하1층에는 오피스텔용 기계실, 저수조, 소화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빗물저수조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호실은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지하1층에는 재연헬름 및 지하주차장 헬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접한 주동의 인접호실은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한 공동주택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호실은 사생활 침해, 소음, 빛 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 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엘레베이터홀, 에어컨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당 단지에 차량 출입구는 2개소가 있으나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차량 출입구는 9105동 동측에 있는 공동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공용 출입구를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차량출입구(9104동 서측)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1층의 일부 구간은 공동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며, 차단기를 통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 북측에 오피스텔용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되어 일부 호실은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1층 재연헬름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재연헬름 급기 DA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저층호실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시공사 헬름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추가 혹은 이동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상층에는 DA(제연DA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호실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지하1층은 택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천정고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 지하2층은 램프의 천정고 2.3m로 택배차량 출입 불가하며, 오피스텔 입주자는 지하 1층 주차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이용에 동선간섭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제습 및 냉난방을 위한 공용홀 에어컨용 실외기 배치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보행자의 동선간섭 및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헬름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헬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차장은 지하 2층~지하 1층까지, 주차대수는 아파트 503대, 오피스텔 54대, 근린생활시설 72대, 총 629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 입주자는 지하1층의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2개소(오피스텔 주차구획 내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및 충전대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추가설치는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비즈니스라운지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p>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이 지상1~2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 일부 호실에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 MDF실는 지상1층 복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호실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라운지는 9105동 하부 지상3층에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인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형태는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었으며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 및 마감은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비즈니스라운지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냉방장치가 설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비즈니스라운지)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1개소가 지하1층 주차장에 설치됨.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은 해당 오피스텔 전용시설이며,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 및 다른 블록의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은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위호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실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형태 및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콘센트 등), 호실분전반,통신단자함 등은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 몰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F.C.U,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의 안목치수 적용 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제외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쪽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도록 계획하여 비상시 아래층 호실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 피난기구(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상하층 좌우 교차되어 설치됩니다. • 호실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및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입주 시 호실 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 시 마감재별 내경 치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방문을 닫을 경우 진동으로 초음파 현관센서등이 작동될 수 있는 경우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파우더장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 시 호실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덕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면면계획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창호의 프레임에는 도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 방지 장치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호실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주방 및 화장실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호실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호실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세대 내 다용도실 내부에는 가스계량기 및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일부 공간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천장속 배관 및 덕트 설치 등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호실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콘센트 등)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간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신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준하는 설계로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호실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 주광색 등으로의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단, 간접조명은 3000K 임)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 본공사 시 호실 내 화장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호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입주시 정책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단101역세권 RC1, C1, C9-1, 2 블럭의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386호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 의무지역에 해당되어 지역냉방(FCU) 및 지역난방(바닥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냉·난방설비의 설치가 불가합니다.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RC1 블럭 공동주택 제외)

■ 분양관련 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견본주택 약도	분양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1-1 / 검단신도시 RC1 블록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 ■ 홈페이지 : https://롯데캐슬넥스티엘.com ■ 분양문의 : 1660-2114 <p>※ 본 입주자모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공급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입주자모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입주자모집광고에 기재사항의 오류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p>